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표현의 자유, 침묵을 강요하나?  
[발제자]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정토론자] 김정식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변인  
[일 시] 2019년 5월 16일(목) 오전 0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문자 후원  
#7079-4545

### 제313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 약

- 세계 180여 개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 수준을 보여주는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2018년 기준 44위로 중진국 수준이며 개선이 필요하다.
- 표현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의 가장 핵심이자, 인권의 요체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자신의 사

상과 신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표현의 자유’로 불린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엄격한 요건’ 하에 적용한다.

- 2019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혐오차별 대응 특별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 목적은 ‘혐오차별 예방 지침’을 만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국회통과이다.

- 대부분 국가에서의 ‘혐오표현’ 규제는 민족, 인종, 종교, 소수자 중심이고 젠더갈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젠더를 중심으로 ‘혐오표현’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혐오표현 논의가 ‘여성혐오’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의도치 않게 젠더전쟁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 한국 현실에 적합한 ‘혐오표현’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입법적 규제에 앞서 악성댓글·명시·조롱 표현 등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아래에 두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역시 방어를 위한 다양한 ‘비입법적 접근’을 우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지정토론자의 토론)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라는 현 정부의 주장은 개인의 자유보다 민주주의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이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 제도가 존립하는 것이지 제도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 수준

- ◆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발표한 한국 ‘언론자유지수’는 세계 180여 개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은 2018년 기준 44위, 중진국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은 과거의 역사적 상황으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많은 부침을 겪었다. 인터넷 실명제, ‘미네르바 사건’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분석된다.

## ◆ 표현의 자유 보장은 멀고 험난한 길

###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의 요체

- ◆ 표현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의 가장 핵심이자, 인권의 요체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라고 적시

되어 있으며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표현의 자유’로 불린다. 그러나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7조 제2항) 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제21조 제4항)이다. 2000년 헌재 판결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적용된다.

- ◆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지난 10여 년간 한국 ‘표현의 자유’ 보장은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왔고 아직 보장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강화 방향으로 간다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법적·입법적 조치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 ◆ 혐오표현 규제의 움직임

### 표현의 자유 보장의 어려움

- ◆ 2019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혐오차별 대응 특별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 목적은 ‘혐오차별 예방 지침’을 만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혐오표현의 정의와 그 범주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차별과 관련된 정책과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자칫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 ◆ 2013년 6월에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혐오죄 법안’이 발의되었다. 물론 당시에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지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5.18 진상규명 및 왜곡처벌 특별법’ 등의 역사 왜곡처벌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혐오표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확산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않는지’에 대해 엄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개연성은?

### 혐오표현 규제 VS 표현의 자유

- ◆ 자기를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은 세계의 문명사적 추세다. 하지만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지나치면 자기검열 및 표현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혐오표현을 규제하더라도 사용한 문장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 오늘날 우리사회는 이념에 따른 갈등이 도를 넘고 있으며 혐오가 혐오를 부르고

있다. ‘혐오’는 실체이기도 하고 허상이기도 한 데 이것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서는 갈등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 해외 사례

- ◆ 일본의 경우는 ‘규제적극설’이 제기되긴 하였으나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독일·프랑스의 경우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 있으나 홀로코스트라는 특별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맥락이 존재했다.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은 혐오표현 규제 자체가 거의 없다.
- ◆ 혐오표현 규제에는 적극적인 유럽도 ‘민족, 인종, 종교적’ 혐오 등을 중심으로 ‘협의적 맥락에서’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각 국가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특정 혐오표현만을 협의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 혐오표현을 넓게 설정해서 규제하지 않는다.

## ◆ 혐오표현과 ‘젠더(성)전쟁’과의 관계는?

### 혐오표현과 젠더(성) 갈등

- ◆ 대부분 국가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때에는 민족, 인종, 종교, 소수자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며 젠더갈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젠더를 중심으로 ‘혐오표현’ 규제가 논의되는 특이점을 보인다. 일례로 현 정부에 대한 남녀 지지율의 차이는 40-60대가 5% 내외인 것에 반해 20대는 30%로 간극이 크다.
- ◆ 소수자가 다수자를 향해 혐오표현을 하는 것 역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점은 논의되지 않는다. 반면 ‘성(gender)’에 치우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 ◆ 여성입장에서 ‘남성혐오’는 혐오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하며 남성 입장에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관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여성혐오’ 중심의 혐오표현 규제 논의에 대한 불만이 존재한다. 혐오표현 논의가 ‘여성혐오’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의도치 않게 젠더전쟁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 ◆ 앞으로 방향은?

- ◆ 한국 현실에 적합한 ‘혐오표현’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간을 가지고 지속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하향식(top-down) 추진은 사회적 분열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 ◆ 표현의 자유보장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선결과제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은 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개인의 행위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움직임은 방지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원칙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 악성댓글·멸시·조롱 표현들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아래에 두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역시 방어를 위한 다양한 ‘비입법적 접근’을 규제에 앞서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 ‘온라인 행동강령’을 확립하여 IT기업, 시민사회, 일반 시민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절을 지켜나가야 한다. 현재에는 온라인이 혼란스럽고 제대로 된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
- ◆ 초중고교 인권교육과 훈련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공·사기업에 인권경영을 결합시켜 자정시스템을 만들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 ◆ 입법적 방향은 오랜 기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바람직하다.

### ◎ 지정토론자의 토론 (김정식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변인)

- ◆ 이전까지 언론인이 아닌 개인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느끼지 못했으나 최근 ‘김정은 서신’ 사건으로 직접적인 제한을 체감할 수 있었다.
- ◆ 학생이 대학에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공권력이 개인 주택에 침입, CCTV를 통한 개인 동선 파악, 지문인식을 통한 추적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현 정부는 공권력을 사용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 ◆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이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 제도가 존립하는 것이지 제도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법을 지키는 한 개인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